

제 828 호

1981. 3. 2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문화공보관 김 진 호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225 호 (교육위원회규칙)	: 서울특별시공·사립 학교수업료 및 입학 금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3
◎ 훈 령		
제 542 호 :	서울특별시민원실내부운영규정	5
◎ 고 시		
제 55 호 :	농지개발조각합병및해산에 관한고시	7
제 5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설계변경승인	8
제 57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8
제 5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9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5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공람공고	10
제 1 호 (산업대학교) : 직인개작공고	10
제 2 호 (산업대학교) : 직인개작공고	11
◎ 사 형	

규 칙

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이창갑 ㉠
1981년 3월 2일

○ 교육위원회규칙제 225 호

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중 별표 1 을 별지 1 과 같이 한다.

제 5 조 제 1 항중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제 4 조 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 4 조"로 하고 별표 2 를 별지 2 와 같이 한다.

부 칙 (1981.3.2)

이 규칙은 1981.3.1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원)

구분 학교별	년,기 (월) 별	수업료	입학금	적용지구	비 고
대 학 (공립)	년	222,000 (176,000)	70,000		6개월을 1기로 정수 ()안은 재학생
	기	111,000 (88,000)			
고 등 학 교 (공,사,인본,실업)	년	207,240	6,420	1급지	3개월을 1기로 정수
	기	51,810			
자 중 학 교 (교)	년	186,480	5,770	"	"
	기	46,620			
고 등 기 술 학 교 (교)	년	186,480	5,770	"	"
	기	46,620			
방 송 통 신 고 등 학 교	년	42,260	2,940	"	6개월을 1기로 정수
	기	21,130			

2-4 계 828 호 시 보 1981.3.2

구분 학교별	년.기 (월)별	수업료	입학금	적용지구	비 고
대학 (공립, 사립)	년	130,920	5,400	1급지	3개월을 1기로 정수함
	기	32,730			
각종 학교 (중)	년	130,920	5,400	"	"
	기	32,730			
특수 학교 (중)	년	130,920	5,400	"	"
	기	32,730			
기술 학교 (중)	년	130,920	2,880	"	"
	기	29,430			
보통공민 학교	년	76,440	2,880	"	"
	월	6,370			
국민 학교 (사립)	년	110,640	3,940	"	"
	월	9,220			
유 치 원	년	149,400	6,970	"	"
	월	12,450			

<별표 2>

(서울특별시) 수업료분할징수표
(공, 사립 학교)

(단위: 원)

기 별	1 기 (3.1-5.31)	2 기 (6.1-8.31)	3 기 (9.1-11.30)	4 기 (12.1-익년2.28)
대학 (공립)	111,000 (88,000)		111,000 (88,000)	
고등학교 (공립, 사립)	51,810	51,810	51,810	51,810
각종 학교 (고)	46,620	46,620	46,620	46,620
고등기술학교 (고)	46,620	46,620	46,620	46,620
방송통신고등학교	21,130		21,130	
중학교 (공, 사립)	32,730	32,730	32,730	32,730
각종 학교 (중)	32,730	32,730	32,730	32,730
특수 학교 (중)	32,730	32,730	32,730	32,730
기술 학교 (중)	29,430	29,430	29,430	29,430

월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학교별						
고등종합학교	6,370	6,370	6,370	6,370	6,370	6,370
국민학교(사립)	9,220	9,220	9,220	9,220	9,220	9,220
유치원	12,450	12,450	12,450	12,450	12,450	12,450
월별	9월	10월	11월	12월	익년1월	익년2월
학교별						
고등종합학교	6,370	6,370	6,370	6,370	6,370	6,370
국민학교(사립)	9,220	9,220	9,220	9,220	9,220	9,220
유치원	12,450	12,450	12,450	12,450	12,450	12,450

훈 령

서울특별시 민원실내부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1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 서울특별시훈령제 542 호

서울특별시민원실내부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업무
를 처리함에 있어 친절, 공정과
신속, 정확을 기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 행정을 증
진시키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민원실 내부운영에 관한 선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민원인의 정의) 이 규정
에서의 "민원인"이라 함은 행
정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특정행
위를 요구하거나 문의하는 자연
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자가 행정기관에 어떠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3 조 (민원사무의 정의) 이 규
정에서의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 2 조 제 2
항에 규정한 사무와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말한다.

제 4 조 (민원실의 범위) 이 규정
에 "민원실"이라 함은 민
서리를 위하여 상시 창구를
설치하고 있는 본청: 시민과,
구: 시민봉사실, 동: 민원창구와 기타
사업소등의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 2 장 복 무

제 5 조 (복무)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창구사무 개선에도 끊임 없는 연구와 창안을 하여 시민에게 최대한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 6 조 (직원배치 기준) ① 민원실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능률적이고 용모 단정한 직원을 선발하여 배치한다. ② 창구배치 공무원은 본청에는 4급을류 이상의 공무원, 구 및 동에는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업무들 처리하기 위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근무수칙) 민원실근무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민원 응대시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상담
2. 단정한 근무복 착용
3. 수식시간 운반교대 근무제 실시
4. 명찰의 정위치 착용
5. 무단이석의 금지
6. 민원실내부 형질 유지 등 기타 복무사항 준수

제 8 조 (사무분장) 민원실의 사무분장은 실운영 책임자가 정한 사무

분장표에 의한다. 다만, 실장(과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따로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처리를 명할수 있다.

제 3 장 운영 및 제도개선

제 9 조 (사무처리개선) 민원실 공무원은 담당창구 사무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창의성을 발휘 하여야 한다.

1.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2. 창구 즉결처리 민원의 확대
3. 구비서류 종류의 감추과 서식내용의 간소화
4. 민원인 대기시간의 단축
5. 사무처리의 기계화
6. 출장, 결근등에 대비하여 민원담당 정.부지정제 실시
7. 업무의 권태감을 없애고 능률향상과 민원처리 요원화를 기하도록 순환근무제 의 제도화
8.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등

제 10 조 (환경정비)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과 명랑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키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1. 실내외 미화
2. 대기질 및 민원인 편의시설확충
3. 각종 게시판(물) 정비
4. 간행물 등 홍보책자 비치
5. 민원서식 및 편람

제 11 조 (사무장비확보) 민원사무처리의 신속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장비의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직무훈련) 기관장 및 실운영 책임자는 민원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파견근무 공무원에게 정기, 수시로 직무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직무점열) (1)기관장 및 실운영 책임자는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열하여야 한다.

1. 민원사무처리의 적정여부
2. 서류정리정돈 및 환경정비상황
3. 공무원의 근무자세

(2)직무점열결과 미비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제 14 조 (평가및시상) (1)각 기관장은 연 2 회 이상 민원행정 전반에 걸친

실적평가와 업무개선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시상·승진, 표창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홍보) 각 기관에서는 시민들이 민원상담 제도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제 55 호

농지 개량조합합병 및 해산에 관한고시

농촌근대화 촉진법제 60 조 및 제 6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의 합병 및 해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1.3.2.

서울특별시장

1. 존속하는조합명 : 양동농지개량조합
2. 합병으로 해산되는조합명 : 장안평

농지개발조합

- 3. 존속 및 해산취지 : 조합운영의 합리화로 조합원 경비부담 경감.
- 4. 정관변경취지 :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
 - 가. 합병구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 성동구 중곡동, 능동, 군자동, 송정동, 강남구, 도곡동, 대치동, 강동구 석촌동, 방이동, 가락동, 문정동, 잠지동, 경기도 성남시 북정동
 - 나. 합병후 인가면적 : 1,846.1ha

◎ 서울특별시고시제 56 호

도시계획가업 (학교)
설계변경승인

-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73 호 (78.7.27) 및 동고시제 408 호 (78.8.14)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367 호 (79.8.16) 로 시행허가된 관악구 신림동 672 의 5 필지의 도시계획사업 (학교 : 낙골국민학교) 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시설과 및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3. .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72 의 5 필지
- 나. 사업의종류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낙골국민학교
- 다. 시행면적및규모 : 14,248㎡ (4,310명)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착수일 - 79.8.16 준공예정일 - 81.6.30
- 바. 변경내역 : 별첨도면 (개재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57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3 호 (72.5.23) 로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동구 을당동 121 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p>보인다.</p> <p>1981.3.4. 서울특별시시장</p> <p>1. 사업의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시장)</p> <p>3. 사업 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19-160 김영삼</p> <p>4. 사업기간 : 1981.3.5-1981.10.31</p> <p>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명세서 : 별첨</p> <p>6. 사업의규모 : 3,888.6 평방미터 중 1,992.16 평방미터 (2층건물 1동)</p> <p>7.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생략)</p> <p>8. 공사설계도면 : 별첨 (생략)</p>	<p>건국대학원으로 부터 공과대학 부속 건물을 설립코쳐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한다.</p> <p>2. 판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과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 게 한다.</p>
<p>◎ 서울특별시고시제 58 호</p> <p>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p> <p>1. 건설부 고시제 318 호 (73.8.1) 로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제 127 호 (72.8.16) 로 지적승인된 성동구 모진동 93-1 번지 건국대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p>	<p>1981.3.4 서울특별시시장</p> <p>1. 사업의시행지 : 성동구모진동 93-1</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대학교) 시행허가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부속건물</p> <p>3. 사업시행규모 : 건물 1 동 (건축연면적 3,113.31 평)</p> <p>4. 사업시행지 주소, 성명 : 성동구 모진동 93-1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이사장 유승훈</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시행허가후 1 수일 이내 나. 준공예정일 : 84.3.31</p> <p>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생략)</p>

공 고

서울특별시 공고제 5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공람공고

1. 건설부공고 제 6 호 (68.1.18) 및 건설부공고 제 14 호 (79.2.8) 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된 강남구신사동 284/학교시행사업 구간에 저촉될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2. .

서울특별시 장

공 람 개 요

-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신사동 284/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 다. 사업의 규모(면적) : 16,529 (5,000평)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 마. 사업예정기간 : 1981.2.-1981.10
-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아.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 자.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56-8972) 로 문의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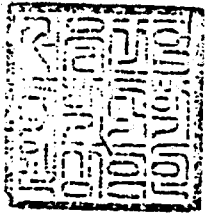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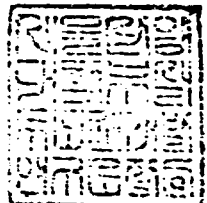


서울산업대학공고제 1 호

직인개각공고

서울산업대학 대학원장 직인파 제인을 관인규정 제 9호의 규정에 의거 81.3.1부터 신규 조각 사용함을 공고한다.

1981.3.1

서울산업대학장

1. 사용 직인 및 계인		2. 폐기직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서울산업대학 대학원장 직인 및 계인	공인명	서울산업대학부설 수도권개발연구 소장직인
<p>○서울산업대학공고제 2 호</p> <p>직인 개 각 공 고</p> <p>서울산업대학 부설수도권 개발연구소 직인 및 계인을 관인규정 제9호에 의 거 81.3.1부터 사용 또는 폐기함을 공고한다.</p> <p>1981. 3. 1 서울산업대학장</p>		<p>사 령</p> <p>○1981년 2월 27일</p> <p>도시 계획 국 장 정 석 현 시 설 부 기 감</p> <p>남서울대 공원 건설사업소장 지방시설부기감</p> <p>서울특별시장</p>	
1. 사용직인 및 계인		○1981년 3월 1일	
인 영	 	<p>중 구 민 방 위 국 하 영 기 행 정 사 무 관</p> <p>서기관에 입함. 중구 민방위국장예 포함.</p>	
공인명	서울산업대학부설 수도권개발연구 소장직인 및 계인		

<p>성북구민방위국 김 현 중 행정사부관</p> <p>서기관에 임함. 성북구 민방위국장에 보함.</p> <p>도봉구민방위국 이 종 건 행정사부관</p> <p>서기관에 임함. 도봉구 민방위국장에 보함.</p> <p>대 통 령</p>	<p>◎ 1981년 3월 2일</p> <p>부내복지관장직대 박 국 자 지방행정사무관</p> <p>부내복지관장</p> <p>세무조사과 김 성 환 지방행정주사보</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서 울 특 별 시 장</p>
<p>종로구도시정비국 김 병 천 지방토목기과</p> <p>지방토목기과에 임함. 종로구 도시정비국장에 보함.</p> <p>서 울 특 별 시 장</p>	<p>◎ 1981년 3월 3일</p> <p>지방지적 이 정 기원시보</p> <p>서대문구 1호봉</p> <p>서 울 특 별 시 장</p>